Ⅲ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편 집 : 손해사정사 박성정[1)]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여기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범위는 도교법의 용어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아래의 용어풀이에 의해 적용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2륜차와 보행자간 사고에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도교법상의 "자동차"정의 : 동법 제2조14호 참조)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며, 원동기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2륜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륜차 중에서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은 제외한 모든 2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륜차중에서 배기량125cc 이하의 2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보행자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서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위의 작업자, 도로의의 유희자, 도로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 도로위에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는 자를 포함하며, 2륜차 및 자전거를 끌고가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포함한다.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의 정의에 의한다.

손수레 :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에 의하면 손수레는 '차'에 해당되며,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1) 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前) PNS손해사정법인, (前) PNS법과학기술연구소, (前)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석사) "논문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판례중심)"

운전 행위로 볼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 우측을 통행해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손수레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해야 한다. 다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해석한다.

◈ 가, 감산요소

해당도표의 기본 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중 또는 감산 시키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기준에 의해 가, 감산한다.

수정	내용	설명
가산요소	야간	*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 또한,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 시에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한다. *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후부터해가 뜨기 전까지를 만한다. #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모든 차가 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간선도로	*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간선도로인 경우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주행하므로 보행자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 여기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14m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차로가 왕복 4차로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한다.
	차앞 차뒤 횡단	* 횡단보행자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 차앞, 차뒤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골목길에서 급돌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횡단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앞 또는 차뒤에서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정지 후퇴 사행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정지)와 뒤로 후퇴하는 경우(후퇴), 그리고 음주보행 등으로 차도를 어슬렁거리는 경우(사행)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횡단규제 표시	단 금지표지 등의 안전표지나, 또는 그 밖의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에 의해 차도 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 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교차로 사각 횡단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비스듬히(사각)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이다.
감산 요소	주택, 상점가	* 주택, 상점가는 보행자의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공장이나 관청가 등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등에는 감산적용한다.
	어린이, 노인	* 어린이, 노인은 사회 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보다 낮으므로 감산한다. *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12세 이하의 자(도교법 제11조1호)를 말하며, 노인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사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집단 횡단	* 보행자가 집단으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함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 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의 동시횡단을 의미하며,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안거나 업은 채 횡단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차도 구분 없음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인의 동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여기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도로교통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상 보 · 차도의 정의 : 연선식 ,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 하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하며, 여기서 "안전표지"는 교통의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따라서 보차도 구분은 연선식에 의한 구분뿐만 아니라 단순히 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므로 지반국도와 같이 차도를 따

		라 비포장보도가 있으면서 흰색선에 의해 구분이 있는 도로로 보아야 한다.
	차의 현저한 과실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위반(예 : 핸들,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정도보다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다만, 차측의 과실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부주의가 현저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운전 *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등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차의 중과실	상기의 현저한 과실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 내용으로써 * 졸음운전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초과운전 *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이다.